

접 수	의안과 - (20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사회적 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법 개정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건의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6 년 1 월 28 일

청 원 인

성 명 : 현 화 립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소 개 의 원 :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성명 : 현화림
건명	사회적기업 자생력강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에 관한 청원
소개년월일	2016년 1월 28일

소개의견

청원인 현화림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의원입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2016년 1월 임시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 때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 중 의결된 안건 하나가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이었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의 목적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정된 기존 목적 외의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그 사업범위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개별화된 지원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민간기업이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유인책이 부족하여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기 어려우며,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체제가 미흡하여 정부의 재정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서 의결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기업의 목적을 확대하여 유연한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이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인세 및 지방세를 인하하는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폐지 요건에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반영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의회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 다방면에 걸쳐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분 투자를 하거나 사무 처리 보조,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투자하는 연계기업·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40%까지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승인 기준은 연계기업·법인 또는 개인의 투자 규모와 사업 기대 성과를 중심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①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인증의 취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5.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른 평가가 연속 3년 이상 미흡한 경우

신구문 대조표

현행	개정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1. "사회적기업"이란 <u>사회 다방면에 걸쳐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u>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u>지분 투자를 하거나 사무 처리 보조,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u>
제16조(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u>투자하는</u> 연계기업·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② <u>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40%까지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u>
제18조(인증의 취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	③ <u>승인 기준은 연계기업·법인 또는 개인의 투자 규모와 사업 기대 성과를 중심으로 하며 그</u>

<p>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p> <p>2.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p> <p>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p> <p>4.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2.2.1.></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2.1.></p> <p>④ 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2.1.></p> <p>[전문개정 2010.6.8.]</p>	<p>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0.6.8.]</p> <p>제18조(인증의 취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p> <p>2.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p> <p>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p> <p>4.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p> <p>5.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른 평가가 연속 3년 이상 미흡한 경우</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2.2.1.></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2.1.></p> <p>④ 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2.1.></p> <p>[전문개정 2010.6.8.]</p>
--	---

청원서

사회적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에 관한 청원

1. 제안이유

(1) 현행법 및 지원제도의 문제점

①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사회적 목적 규정

사회적 기업의 종래 의도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을 관할하는 부처도 고용노동부이며, 그 유형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만 분류되어 있어 일자리 창출 외에 다른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들에 대한 특화된 지원이 부족합니다.

②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족

현재 사회적 기업 육성법은 '연계기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 기업에 대해 재정지원, 경영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 기업과 인적, 물적,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 기존 법률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서 지분투자를 한 기업인지 단순히 호의나 계약에 의해 특정 사무를 처리하는 기업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계기업들에 대한 유인책 자체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③ 인증 후 사후관리와 평가제도의 미비

정부 지원을 받는 인증 사회적 기업은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인증 사회적 기업 중 사회적 목적 달성에 실패하거나 달성여지가 없는 기업에 대한 퇴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즉,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성과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2. 주요골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 다방면에 걸쳐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 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분 투자를 하거나 사무 처리 보조,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1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투자하는 연계기업·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40%까지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승인 기준은 연계기업·법인 또는 개인의 투자 규모와 사업 기대 성과를 중심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18조 ①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인증의 취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 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5. 제10조, 제 10조의2, 제11조,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른 평가가 연속 3년 이상 미흡한 경우

□ 신구문 대조표

현행	개정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1. "사회적기업"이란 <u>사회 다방면에 걸쳐</u>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u>지분 투자를 하거나 사무 처리 보조,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u>
제16조(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u>투자하는</u> 연계기업·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②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40%까지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인증의 취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	③ 승인 기준은 연계기업·법인 또는 개인의 투

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자 규모와 사업 기대 성과를 중심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18조(인증의 취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5.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른 평가가 연속 3년 이상 미흡한 경우